

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
번호

2000 - 5

제안연월일 : 2000. 4. 14.

제안자 : 손관준의원외4명

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·기타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정례회제도 운영
- 정례회 개최와 회기에 관한 사항
-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한 사항
- 정례회에서 심의사항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

□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8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
-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

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

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 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

제4조 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

제5조 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